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29
----------	-------

발의연월일 : 2025. 7. 17.

발 의 자 : 윤준병·서영석·이병진
박용갑·문대림·송옥주
임호선·유동수·임미애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조정의무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태임.

이에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그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보조금의 지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며,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양곡수급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수급계획상의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사항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3호)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제1항에”를 “제1항에”로, “통보하여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양곡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양곡수급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수급계획상의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사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1. 「양곡관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조정대상자
2. 제1호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는 경우 그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u>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u>----- -----<u>. 이 경우 「양곡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양곡수급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수급계획상의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사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u> 1. 「양곡관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u>미곡 재배면적 조정대상자</u> 2. 제1호 외에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	② -----제1

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
른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재
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다.

<신 설>

③ (생 략)

항에-----
-----대
상자에게 통보하여야-----.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재배면적을 조정하
게 하는 경우 그 감축 또는 조
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
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배면적 조정대
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
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